

문서관리번호	2026 - S - 06
최초 제정일	2023. 12. 1
최신 개정일	2026. 02. 1
문서관리부서	구매부

유성기업 협력사 행동규범

2026. 02. 1.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유성기업은 자사의 운영 및 공급망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성과를 평가하며,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투명하게 소통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유성기업은 자사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서 윤리적인 기업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인권 침해, 환경오염 및 훼손, 불법적 지배구조 관행 등과 연관된 원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유성기업은 원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

유성기업은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협약」,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실천한다. 또한, 유성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며, 이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EUBR)」, 「EU 삼림벌채 방지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EU Prohibition of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Regulation)」,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예방법(United States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등 관련 규제 요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사를 수행한다.

유성기업은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를 식별, 평가, 예방, 완화 및 시정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의 지속적이며 사전적·사후적인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나. 적용 범위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은 유성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의지와 원칙, 그리고 유성기업이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반영한다.

행동규범은 유성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직·간접 협력사, 컨설턴트, 대리인, 가치사슬 거래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영업대리인, 유통 파트너, 중개인 및 거래업체 등이 포함되며(이하 개별적으로는 “협력사”, 통칭하여 “협력사들”이라 함), 이들은 유성기업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성기업을 대신해 활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성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는 윤리적인 기업 행동을 준수하고,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기준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사항은 모든 협력사에 폭넓게 적용된다.

다. 관련 정책

행동규범은 유성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광범위한 이행 의지 및 관련 거버넌스 문서와 함께 참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서들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여기에는 유성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Supply Chain Sustainability Management Policy)」,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Responsible Raw Materials Procurement Policy)」, 「책임광물 정책(Responsible

Minerals Sourcing Policy)」, 「인권 정책(Human Rights Policy)」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정책과 절차는 유성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이끄는 기대사항,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한다. 공개된 관련 문서는 유성기업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하는 모든 관련 유성기업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 협력사 책임 및 역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의 조항에 부합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직접, 또는 필요시 유성기업이 위임한 제3자를 통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규범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문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사 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및 조사의 결과에 따라, 유성기업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협력사가 적절히 대응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사는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는 협력사 선정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본 규범을 위반한 협력사가 의미 있는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모든 의무를 포괄하는 문서는 아니며, 지속적인 개선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보완·개정될 수 있다. 행동규범은 유성기업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문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성기업은 협력사 및 그 임직원이 본 행동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충분히 이해하며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접근 경로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성기업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소통 기회,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

화를 지원한다. 한편, 협력사 역시 본 행동규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자사의 공급업체, 하위 협력사 및 상위 공급망 파트너가 본 행동규범의 기준을 준수하며, 요청 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문서화된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책임 있는 조달 원칙

유성기업은 아래에 제시된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한 핵심 원칙에 기반하여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당 원칙을 준수한다. 유성기업은 자사운영 전반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며, 협력사 또한 자체 운영 및 공급망 내에서 이와 부합하는 리스크 기반의 적절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협력사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부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윤리적 기업 행동

법률 및 규정 준수

- ① 협력사는 항상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자사 비즈니스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지역, 국가 및 다관할권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기준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상이한 경우, 본 행동규범과 법률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투명성 및 반부패

- ① 협력사의 임직원은 최고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협력사의 임직원은 뇌물 수수, 자금세탁, 강요, 횡령, 사기, 담합 등 어떠한 형태의 부패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되며,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부당한 이익 획득 등의 행위 또한 금지된다.
- ③ 협력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고 조사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가 보복이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④ 협력사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채용 수수료를 비롯한 어떠한 비용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해 상충

- ① 협력사는 명확하게 정의된 운영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② 협력사의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 제공, 승인 또는 지원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에는 사익을 위해 유성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거래 및 경쟁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적용 가능한 반부패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협력사는 자사 협력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된 지급 금액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④ 협력사는 가격 담합, 공급량 제한, 특정 지역 또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거래 조건 조작 등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타인과 공모하거나, 이와 관련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협력사는 경쟁사,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정보를 부당하게 획득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

미승인 부품 유입 방지

- ① 협력사는 무단 또는 위조된 원자재나 부품을 제조, 사용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 ② 협력사는 무단 또는 위조된 원자재나 부품이 자사 시설에서 사용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성기업 등 관련 기관이나 고객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자사가 생산한 원자재 및 부품이 당초의 사업 목적과 계약상 의무에 따라 사용되고 유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협력사는 자사 사업장에서 위조된 원자재나 부품이 사용되거나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 또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수출통제 및 제재 준수

- ① 협력사는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와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수출통제 또는 경제제재 대상인 국가, 지역,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어떠한 거래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③ 협력사는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와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국제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유성기업의 실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정보 보호

- ① 협력사는 고객 또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와 관련된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적절한 동의 없이 공개·보관·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거나 유성기업이 법적 의무(예:EUDR 등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준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협력사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수집·이용해야 하며, 수집 목적이나 보유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동의 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적재산 보호

- ① 협력사는 고객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해당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책임 있는 조달 활동

- ① 협력사는 유성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해 책임 있는 조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세부 사항은 유성기업의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및 「책임광물 정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민감한 원자재, 부품 및 구성품의 추적 가능성과 출처 확인
- 원자재, 부품 및 구성품의 전 생산 및 조달 과정에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텅스텐, 주석, 탄탈럼, 금과 같은 분쟁광물 및 코발트, 운모 등 책임광물에 대한 유성기업의 정책 적용 및 이행
- EUBR에 따른 배터리 관련 실사 및 조달 요건 이행
-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에 따라 원자재 및 부품 공급망에서의 산림 전용 방지를 위한 요건 및 실사 의무 이행

- ② 협력사는 상기 사항을 포함한 유성기업의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및 「책임광물 정책」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 ③ 주석, 텅스텐, 탄탈럼, 금(3TG), 코발트, 리튬, 천연흑연, 니켈 또는 이들의 화합물 등 EUBR 또는 OECD 실사가이드(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의 적용을 받는 광물의 조달, 거래, 가공 또는 공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협력사에는 다음의 추가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 ④ 협력사는 관련 제련소 또는 정련업체 식별을 포함하여 해당 광물 및 원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채굴, 가공 또는 제련 단계에서 인권 침해, 비윤리적 행위,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철저히 평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 ⑤ 이러한 광물의 거래 또는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력사는, 채굴 및 가공 단계에서 인권 침해, 비윤리적 행위,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실사 체계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요구되는 모든 환경 인허가를 적시에 취득하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자사의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본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i. 명확한 조직 구조 및 책임 체계
 - ii. 환경 목표 및 이행 계획의 수립
 - iii. 운영 절차 및 작업 매뉴얼
 - iv. 성과 모니터링, 내부 감사 및 평가 체계
 - v.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ISO 14001과 같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은 기업의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이다. ISO 14001 과 같은 국제표준의 도입 및 외부 인증 취득은 협력사의 책임 있는 환경경영 수준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협력사는 자사의 주요 환경 측면을 고려한 환경방침을 수립해야하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핵심 환경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 i.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GHG) 배출의 관리 및 감축
 - ii.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보호
 - iii.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관리 및 저감
 - iv. 폐기물 관리 및 순환자원 활용(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수은 등 포함)
 - v.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① 협력사는 자사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GHG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 ② 협력사는 효율적인 관리 방식, 청정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자원 관리

- ① 협력사는 자사의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을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용수 사용을 저감하고 폐수 처리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배출수는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보다 엄격한 사내 수질 및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자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적절한 저감 방식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배출 농도가 관련 법적기준 또는 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재사용 가능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① 협력사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를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매립 또는 소각 대상 폐기물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부자재 및 부품의 회수를 포함한 재사용, 재활용,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제품 및 공정의 전과정(Lifecycle)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환경유해 잔류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운송, 저장, 취급,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자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용기에 명확한 표시를 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적절

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또는 유통하는 원자재, 부품, 제품에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당 물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벌채 금지

- ① 협력사는 자사의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고, 부정 영향을 예방, 최소화, 상쇄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사 사업장 및 인근 지역사회 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복원 및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산림벌채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 산림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며, 가능한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산림벌채 금지 약속과도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소음 및 진동 관리

- ① 협력사는 소음 및 진동과 관련된 자사 사업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오염을 예방·최소화·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여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건강과 작업환경 쾌적성을 보호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소음 및 진동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배출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인체 또는 환경에 실제 또는 잠재적 위험이 확인될 경우 효과적인 저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양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 ① 협력사는 자사 사업 활동이 토양 품질 및 토지 이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토양오염, 토양 침식 및 토지 황폐화를 예방·감소·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와 지역 생태계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부적절한 토지 이용 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또는 잠재적 토양오염, 토양 침식, 토지 황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기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 리스크 예방 (공장 안전)

- ① 유성기업은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력사 역시 환경 관련 운영 장애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기대한다. 협력사는 주변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을 식별하고 저감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환경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다. 노동/인권

아동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자사 운영 전반에 걸쳐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해야 하며, 고용 가능 최소 연령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에 따라 최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협력사는 모든 직원 및 지원자의 나이를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 등 적절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동노동의 위험이 식별될 경우, 협력사는 즉시 해당 고용을 종료하고 유성기업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시정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② 협력사가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정의한 고위험 업무에 배치해서는 안되며,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하거나 관련 노동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래업체(하위협력사)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해서는 안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제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노동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자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강제 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29호에 따라, 노동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ILO 협약 제29호 2조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채무 담보 노동, 인신매매, 노예노동, 수감자노동 및 노동자의 이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② 협력사는 고용 조건으로 신분증, 비자 등 개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폭행, 협박, 감금과 같은 강압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포함)는 처벌 우려 없이 자발적으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동의 자유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공정한 조건 하에 고용 시작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유성기업에 공급하는 제품 전체 또는 일부를 강제 노동으로 생산해서는 안 되며, 강제 노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규제 대상 기관이나 개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구매, 포함, 설치, 사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강제노동



관련 규정은 유엔(U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유럽연합(EU), 대한민국 정부 및 기타 정부기관 등이 수시로 부과하는 수입 금지, 제재 및 강제 노동 관련 규제를 포함한다.

- ④ 협력사는 이후 제시되는 제3장 '공급망 실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리스크 기반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전체 업스트림 협력사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업장 및 운영 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자사의 1차 및 2차 협력사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은 강제 노동과 관련된 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실사 결과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⑤ 협력사는 전 생산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 노동을 명확히 금지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i. 원자재, 부품 및 구성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 ii.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 iii. 직접 및 간접 공급망 모두에 이들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
- ⑥ 협력사는 임직원과 자사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강제노동금지 및 관련 행동규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⑦ 협력사는 자사 협력사에도 동등한 행동규범 채택과 관련 절차 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준수 여부는 모니터링 및/또는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 ⑧ 공급망 내에서 강제노동의 위험이 식별될 경우, 협력사는 시정 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 및 실행하고 지체 없이 유성기업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하위 협력사나 기타 간접 협력사를 통해 강제노동제품이나 부품이 유성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유성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차별 금지 및 괴롭힘 금지

-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 및 가족 상태,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한 모든 고용 과정(채용, 승진, 배치, 교육 및 훈련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② 모든 근로자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또는 불이익 처우가 고용의 어떠한 측면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복리후생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상 체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④ 협력사는 채용 광고나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업무 수행과 무관한 차별적 요건(예: 외모, 특정 신체조건)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직무 기술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술, 자격 및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노동 및 임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정된 급여일에 정확하고 적시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명확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여 임금 구성 항목과 공제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호적인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근로자 권리, 임금 체계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필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근로자가 기



술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협력사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근무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거, 식사, 의료, 교육, 교통 등 필수 생활비를 고려한 생활임금 수준과 현재 임금 수준 간 격차를 분석해야 한다.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근무 시간

- ① 협력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업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적법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모든 직원이 평균적으로 주1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적 대우

- ① 협력사는 모든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배정을 자제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대규모 이동,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현지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사전 협의 기간내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진행한다.

윤리적 채용

- ①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는 직원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개인 서류를 보관, 폐기, 압수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직원의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② 협력사는 고용을 대가로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채용과정은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근로자도 채용 또는 노동 중개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부과받아서 안 된다.
- ③ 협력사는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무 조건에 대한 서면 문서 또는 구두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④ 협력사가 노동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여 운영되는지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 중개 기관이 기만, 강압, 사기적 수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모든 고용 조건이 채용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개되도록 해야한다.

원주민 권리 및 지역사회

- ① 협력사는 자사의 사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 문화,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협력사는 이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 의미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들의 권리와 생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지 처분권(자유의사에 의한 사전 인지 동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및 불법 강제퇴거 금지 포함)

- ① 협력사는 토지 취득 또는 사용 시 해당 토지 및 자원에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법적 및 관습적 권리를 존중하고, 불법 강제퇴거 및 재산권 박탈을 방지하며, UNDRIP 및 기타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원주민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동의(FPIC)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협의 결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며, UNDRIP에 명시된 약속과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인권 옹호자 보호

- ① 협력사는 자사 사업과 관련된 인권 옹호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이 두려움, 협박 또는 피해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인권 옹호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폭력을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안전/보건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 ① 협력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사업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건강 및 안전관련 인허가를 완전하게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 위험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이 시스템에는 명확한 조직 구조, 계획 및 실행절차, 성과 평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 장비 및 시설의 안전 관리

- ①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잠재적 위험 기계, 장비 및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해당 기계, 장비 및 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 보호 장벽 및 비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구(PPE)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 보호구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적절히 관리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상 대응 준비

-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질병 발생, 화재 및 기타 산업재해를 포함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보고 절차, 대응 조치 및 사후 관리 방안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내부 계획이나 지침에 따라,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교육과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비상 시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구 경로 및 표지,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 화재 예방 장비가 적절히 설치되고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고관리

-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모니터링, 기록 및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② 산업재해 또는 심각한 질병 발생 시, 협력사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직원 대피를 포함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위험을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안전평가

- ① 협력사는 근로자가 사고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기계, 장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위험요소와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 명확히 보이고 접근 가능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임산부 및 청소년 근로자에게 중대한 안전 또는 건강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관리

- ① 협력사는 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의 위생과 청결 유지에 힘써야 한다.
- ② 기숙시설을 제공하는 협력사는 안전 표지판, 조명, 냉·난방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어야 하며,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관련 보건 규정을 준수하여 일반 또는 전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직무 변경, 근무지 변경, 근무 시간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협력사가 직원에게 기숙사와 같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i. 비상 탈출 시설(예: 각 층의 대피 장치)
 - ii. 화재 감지 및 경보시스템
 - iii. 정기적인 시설 유지 관리

- iv. 식수, 환기 및 난방 시스템
- v. 위생 시설(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등)
- ⑤ 협력사가 직원용 식당과 같은 식음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위생적인 식품보관, 정기적인 재고 점검, 시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과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

- ① 협력사는 수급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안전 및 보건의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이는 구급인이 관련 안전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현장별 안전 및 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적절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협력사는 구급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수급인과 관련된 모든 사고가 신속하게 보고되고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 공급망 실사

- ① 모든 협력사는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이 사업 운영, 공급망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협력사는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에 명시된 다음 여섯 단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단계** – 책임 있는 사업 수행 정책 및 관리 시스템 내재화;
책임 있는 사업 수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며,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확보해야 한다. 내부 책임 메커니즘

을 마련하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2단계 – 운영, 공급망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윤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3단계 – 부정적 영향 중단, 예방 또는 완화;

확인된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며, 필요시 조정 조치를 포함한다.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피해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단계 – 실행 및 결과 추적;

정성적·정량적 지표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활용해 실사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개선을 위해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5단계 – 영향 대응 내용 공개;

정책, 실행 조치, 결과 및 교훈을 포함한 실사 활동을 공개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규제 준수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6단계 – 구체 조치 제공 및 협력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이러한 실천 방침을 자사 공급망 전반에 확산시키고, 상위 거래업체가 유사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와 대응은 기업의 규모, 산업 분야, 사업 환경 및 위험의 심각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앞서 명시한 일반 실사 의무에 더해, 유성기업의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Responsible Raw Materials Sourcing Policy)」 및 「책임광물 정책(Responsible Minerals Sourcing Policy)」에서 정의한 특정 원자재의 조달, 취급, 가공 또는 거래에 관여하는 협력사는 해당 정책에 명시된 요

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

4. 경영시스템 컴플라이언스

가. 기업 선언문 공시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지속가능한 경영 관행에 대한 의지를 내부와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본 규범의 원칙과 부합하는 공개성명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임원 신년사, 내부지침, 기업정책, 사내 게시판 등 내부 채널을 통해 공유해야 하며, 기업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타 출판물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권장한다.

나.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임명

- ① 협력사는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을 감독하고 성과 모니터링 및 준수를 책임임자는 고위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또한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의 일상적인 기획, 조정 및 실행을 담당할 담당자 또는 팀을 지정해야 한다.

다. 위험평가

-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 관련된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② 중대한 위험이 식별될 경우, 협력사는 내부 정책 수정, 관리 강화, 위험 노출 협력사와의 협력, 불만 처리 또는 시정 절차 수립 등 적절한 완화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해야 한다.

라. 교육 및 소통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조항과 관련 법률, 규정, 내부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맞춤화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언어로 진행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와 관련된 실행 계획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이는 직원에 대한 내부 소통과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자나 고객에 대한 외부 소통을 포함한다.

마. 데이터 관리

- ①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하며, 데이터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필요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관련 법령, 지방 당국, 산업 협회 또는 주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개는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관련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 고충처리

- ①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우려 사항 또는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

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침해와 관련된 신고도 가능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명시된 효과성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내부 고발자를 해고, 위협, 괴롭힘 등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우려 사항을 제기한 개인의 신원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신고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사. 구제 조치

- ① 협력사의 사업활동이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력사는 피해 정도, 피해 당사자의 권리,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사례에 따라 구제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적절한 구제 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 당사자 또한 그 정당한 대표자와 의미 있는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관리

- 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및 기타 공급망 참여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설계, 판매, 제조 과정에서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위험을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및 기타 공급망 참여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인지된 윤리, 환경 영향, 노동 및 인권,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 또는 위험을 식별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자.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 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는 유성기업 또는 지정된 제 3자가 수행하는 정기평가나 현장 감사 시 본 행동규범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③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문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의 실제 업무 관행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④ 협력사는 평가 또는 현장 감사에서 발견된 부족사항이나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⑤ 본 행동규범은 유성기업과 협력사 간의 계약서 일부를 구성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모든 공급 계약서와 함께 해석되고 포함된다.
- ⑥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실제 또는 잠재적 위반사항, 또는 그러한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유성기업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⑦ 유성기업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i) 고의로, (ii) 반복적으로, (iii) 중대하거나 시정 불가능한 방식으로, 또는 (iv)시정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상업적 거래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타 권리나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